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26884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568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268848 판결

##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변론종결 2021. 6. 8.

판결선고 2021. 8. 24.

##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차전1230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381,8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6,3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E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D 유한회사(변경 후 D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다.

2) D 주식회사는 2016. 4.경 피고 B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3075호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4,189,565원 및 그 중 2,122,171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10. 16.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20.

4.경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11) 및 피고들을 비롯한 4명의 자녀들(각 상속지분 2/11)이 있었다.

2) 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8. 11. 5.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C는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2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3862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6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7. 3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피고 C로 변경되었다.

## 다.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승계집행문부여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과 함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가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차전1230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실상 피고 B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B는 이미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1) 가액배상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C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3,500,000원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2,000,000원과 근접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6,381,818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03,500,000원 - 채권최고액 68,400,000원) × 피고 B의 상속지분 2/11,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557,9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6,381,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6,381,8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6,38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 별 지 목 록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 아파트 [ ] 동 제2층 [ ] 호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729.84㎡

2층 729.84㎡

3층 729.84㎡

4층 729.84㎡

5층 729.84㎡

지하 725.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 대 1429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접 수 : 1990년 12월 31일

건물번호: [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84.9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4298.8분의 57.08

관할등기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위 중 채무자 [ ]의 상속지분 2/11. 끝.

